2021년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사업
참여기업 4차 모집 공고

청주상공회의소는 도내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와 청년일자리 제공을 위한 『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사업』에 참여할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.

2021. 07. 12.

청주상공회의소 회장

Ⅰ 공고개요

○ 공 고 명 : 2021년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사업 참여기업 4차 모집

○ 모집기간 : 2021. 07. 12(월) ~ 07. 23(금)

○ 사업기간 : 청년취업자 근로시작일 ~ 2년

○ 모집대상 : 영동군 소재 중소기업, 사회적경제기업, 비영리민간단체 등

○ 모집내용

모집지역	모집 기업수	지원인원
영동군	1개 사	1명

※ 기업당 1명 지원, 모집기업수, 지원인원은 변경될 수 있음

○ 지원내용 : 청년취업자 인건비 및 주거·교통비 지원, 직무교육 등 지원

- 인건비 : 최대 180만원 지원(200만원 기준, 참여업체 10%부담)
- 주거·교통비 : 월 30만원 지원
- 기타 : 기초·심화직무교육, 역량강화, 워크숍, 간담회 지원 등

※ 지원 규모와 기간은 향후 행정안전부/해당 시·군 계획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

Ⅱ 참여자격

○ 충청북도 소재 중소기업*

*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(중소기업의 범위)에 해당하는 기업

○ 각종 지역경제·사회·문화 활동을 영위하는 법인·단체(비영리법인·단체 포함)

○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지역 공동체적 활동*을 우선 고려

* 마을기업·협동조합·사회적기업·자활기업, 영농·영어조합법인, 지역 향토기업 등

○ 업종에 제한은 없으나, 유흥업종 등 일부 부적합업종 제외

< 사업 참여 제외 기업 · 업종 >

- 자본잠식상태 등 사업유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
- 국가 및 지자체, 공공기관(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지정된 기관)
- 업종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, 유흥업종 등 일부 부적합업종
-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
- 임금체불, 국세와 지방세 미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(※체납이 있더라도 국세청 '완납증명서' 발급 사업장에 한하여 참여)
- 4대 보험 미 가입 기업
- 4대 보험 가입 기업이라도 3개월 이상 미납한 기업
-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
- 유흥업종 및 단순업무
  - 전화·방문고객 단순상담
  - 커피점·마트 등 영업점에서 단순 접객·판매
  - 건설·생산 현장 등에서 단순노무
  - 고도의 전문성 또는 과도한 역량이 요구되는 일자리
  - 자치단체장이 이와 유사한 경우로 판단하는 일자리

Ⅲ 절차

○ 추진절차

- 참여기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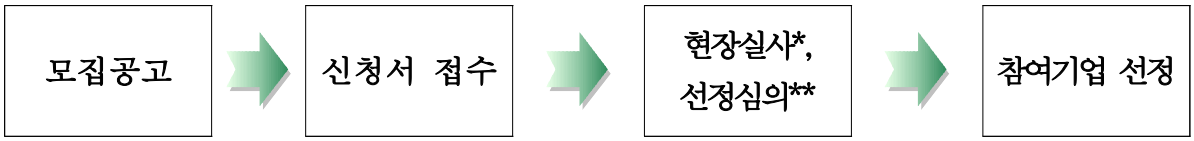

*현장실사 : 참여 신청기업 제출서류 및 고용조건 등 확인

**선정심의 : 현장실사 결과로 자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참여기업 선정

- 청년취업자(참여기업 선정 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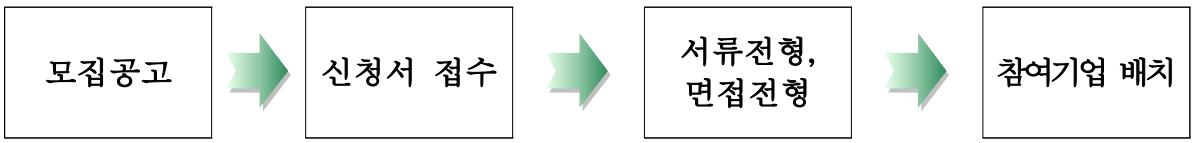

Ⅳ 제출서류

○ 참여기업

-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 사업 신청서 1부 (서식1)
- 개인 및 기업정보 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(서식2)
- 청년취업자 활용 계획서 1부 (서식3)
-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1부
- 법인등기부등본(법인) 1부
- 재무제표(최신자료) 1부
- 4대 보험 가입자명부 1부
- 사회적기업인증서, 마을기업 지정서 등(해당기업)

Ⅴ 문의 및 접수

○ 기　　간 : 2021. 07. 12(월) ~ 07. 23(금) 17:00

○ 접　　수 : 청주상공회의소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사업팀

○ 방　　법 : 이메일(cbhrd1@cjrhrdc.org) 또는 방문접수

○ 주　　소 : (28514) 충북 청주시 상당구 교동로 9, 3층(한국교직원공제회)

○ 문　　의 : (Tel. 043-221-2773)

Ⅵ 기타사항

○ 서류 제출 후 유선으로 접수 확인 요망

○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공개하지 않음

○ 도, 시·군의 현장실사와 심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, 심의결과에 따라 참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
○ 청년이 희망하는 경우, 기업의 채용정보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함

○ 채용된 직원이 지자체와 상공회의소에서 주최하는 교육 등에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함

○ 사업을 수행할 경우, 도·시군, 상공회의소에서 자료요청 (4대 보험, 근로계약, 급여내역, 근무상황 등)시 제출·협조하여야 함

○ 참여기업 선정 후 1개월 이내 청년취업자를 채용하지 못하는 경우 차순위 기업 선발

붙임 : 1.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 사업 신청서(서식1) 1부
2. 개인 및 기업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(서식2) 1부
3. 청년취업자 활용계획서(서식3) 1부. 끝.